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일) 12:00 / 배포 2026. 10. 30.(금) 08:30
<11. 2.(월) 조간>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탈취하여 특허 출원한 한세모빌리티(주) 제재

- 무형의 정보에 대해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 -

※ 주말 엠바고 주의 : 11월 1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유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면서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용 부품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인 K사(社)에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이하 '이 사건 부품') 개발 과정에서 K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로 출원함으로써 K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하였다.

* 열처리를 가한 금속 재질 자동차부품의 **내부 최중심부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함.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부품은 고회전·토크 등 가혹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경도와 비틀림 파단강도가 요구되는바, **열처리**를 통해 **경도 수치**를 **최적화**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강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도출하여 한세모빌리티에 제공한 최적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로 출원 및 등록**하였음

구체적으로, 한세모빌리티는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D사로부터 샘플을 제출받았으나, 해당 샘플의 **강도**가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한세모빌리티는 D사 샘플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 간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 **사후 검증**을 통해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 범위임을 확인**하였고, K사와 **협의 없이 K사가 제출한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하여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하여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개발협력 관계인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한세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붙임2>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현 (044-200-5026)
		담당자	조사관	유푸름 (044-200-50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한세모빌리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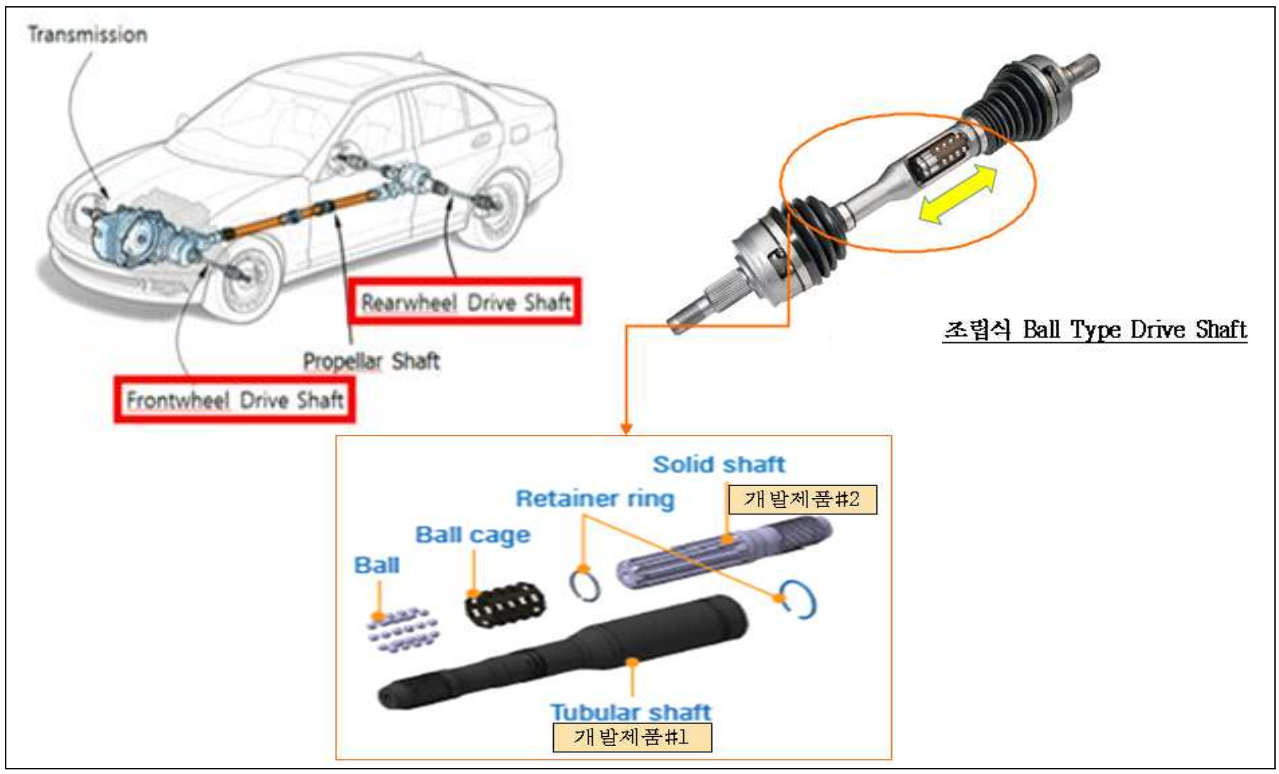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이하 'K사')에게 개발 및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이하 '이 사건 부품') 개발 과정에서 K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오던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 성적서 검토 및 샘플 파괴검사 등 **무단 역분석**하여 알아낸 후, **2020.2.1. 특허를 출원하여 2021.7.2. 자신의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K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성품으로, 속이 빈 튜브(tube) 형태(개발제품 #1)를 가지며 원형 막대 형태의 솔리드 샤프트(개발제품 #2)와 결합됨

< 이 사건 부품의 위치 및 형상 >



① K사는 한세모빌리티로부터 이 사건 부품 개발을 위탁받은 후 2년 이상 기간 동안 열처리를 거친 **1,600여개 부품 샘플**과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축적·도출된 심부경도 수치**가 이 사건 부품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K사는 부품 열처리시 심부경도 수치를 통상 수준보다 높게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기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경도 기준외에 **심부경도 수치**도 열처리 검사성적서에 측정·기재하여 **별도 관리**하였음

※ 반면, 한세모빌리티는 **이 사건 부품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이 직접 심부경도 기준 수치를 **관리**하거나, K사에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

<참고 1> 경도 및 열처리 관련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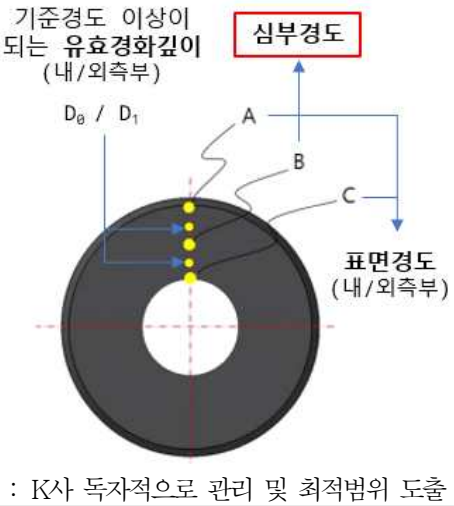
○ **경도(Hardness)** : 금속재료의 **단단함**, 즉 **눌리거나 긁히는 정도**를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 단단한 재료임. 주로 로크웰(HRC) 단위를 사용하며, 측정 부위별 수치(심부경도, 표면경도, 유효경화깊이)를 주요 기준으로 사용함.

○ **강도(Strength)** : 금속이 **힘을 받아도 파손·변형되지 않는 정도**를 뜻하며, 주로 JAEL(존슨 겉보기 신축성 한계) 및 파단하중(Fractured Load)를 기준 수치로 사용함.

○ **경도와 강도의 관계** : 일반적으로 경도가 증가하면 강도 또한 증가하나, 특정 금속의 경우 경도가 특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강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제품 제조시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경도 수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 **열처리** : 금속재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하고 **적정한 속도로 냉각**하여 재료의 모양은 유지하면서 **경도 강화 및 취성(깨지는 성질) 완화 등 금속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뜻함. 통상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 부품에서 열처리의 최종 목표는 표면경도, 유효경화깊이 및 심부경도 등을 최적화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금속제품의 강도를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음.

<참고 2> 이 사건 부품 제작 및 품질 검증 과정(예시)

<table>
<tr>
<td></td>
<td>
</td>
<td></td>
</tr>
<tr>
<td>< 샘플 제작 ></td>
<td>< 열처리 >
경도 수치 최적화 → 강도 최대화</td>
<td>< 파괴검사 >
열처리를 거쳐 제출된 샘플의 강도 측정</td>
</tr>
</table>

② 한편,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이원화 및 **궁극적으로는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한 후 **K사 외에 D사와도** 이 사건 부품 **개발** 및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사와 달리 **D사**가 제출한 **샘플**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하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③ 한세모빌리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와 **변경된 협력업체**인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하여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의 강도 차이의 핵심 요인임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차이점을 D사 샘플에 적용한 결과 단 한 번의 샘플테스트만으로 **D사의 강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④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 **사후 검증**을 거쳐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이 사건 부품의 강도 기준을 최대화하는 최적 범위임을 확인**하고,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자신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실험·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발 과정내내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제출받은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발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위법성 판단

□ 위와 같은 행위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양산 여부 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샘플, 검사성적서 등의 자료 및 이로부터 확인된 기술적 요지 등 정보를 품질확인이라는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나 자기 명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 또한, 한세모빌리티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 **K사**는 자신의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자료**를 **탈취**당하여 **향후 개발** 및 영업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크다.**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구(舊)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현행 4항)

□ **(조치내용)**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샘플)을 분석·실험하여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 아울러,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가 담긴 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하여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개발협력 관계인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2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총액	522,376	555,292	539,036	532,649
매출액	282,634	330,324	506,582	498,074
당기순이익	△43,223	△34,805	△29,997	13,317

2. 관련 법 규정

구(舊)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생략>

구(舊)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